

VI. 언론 피해 발생과 중재활동

언론의 영역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중언론으로까지 확대 설정한다면 언론 중재 제도 운용도 이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1980년 언론통폐합조치로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한 반론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이재진은 <2003 언론중재제도 만족도 연구>에서 “언론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보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조건없이 보도해줄 것을 해당 언론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중재하는 준사법적 피해구제제도”로 정의한다.(p.23) 80년대 당시로서는 표현매체 중심으로 축소 지향되어 버린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제3매체의 공중으로서의 의사 표현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바로 그러한 표현 체제에서 응용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사회 안에서 전부의 자유(freedom)를 이상적으로 향유하여 인간다움의 구현을 열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사회 또는 공동체의 규모 안에서 자유를 실천하고 보장받기 위하여 협약과 공감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liberty)로 freedom 실천을 사회 내에서 보장받는다. 인간이 비록 이성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완성형의 성숙 상태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인간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규정하고 규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구성원 상호간의 자유 실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 유대나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매체가 필요하며 인간과 매체의 표현 사이에는 부단히 불확실성을 내재한다. 거대한 조직을 갖춘 매체의 표현이 공중 속에서 유포되고 이로 인한 개인의 자유나 인격이 침해당할 때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지원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 피해의 발생과 언론 중재의 성립이 타당성을 가진다. 언론 중재는 피해 공중으로서의 개인(또는 준하는 법인, 단체)과 언론사간 초래되는 비평형적 불확실성의 증폭 상태를 양자간 조정에 의하여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양자간에 야기되는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자의 의사 구성 행위가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당사자에게 훼손이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된다. 중재는 표현자와 당사자간의 견해 조정에 의한 공동 합의의 도출과 상호 약속의 실천(반론, 또는 정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합일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 중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재에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1)취재원에

대한 소극적/편향적 접근, (2)기자나 프로듀서의 선입관 내지 고정 관념, (3)기사 구성에서의 개인적 또는 조직의 언어 구사 스타일, (4)언론사에 누적된 다수 가치관, (5)취재에서 자료의 수집과 판단력, (6)편집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축소 등이 다,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매체의 기사를 통하여 접하게 되고 적어도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의사 표현이 굴절되어 형평성이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때 중재 요청의 가능성은 성립된다. 이러한 언론 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현행 중재 제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중재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는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잡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정정보도 요청이다. 둘째는 일방적 주장에 상응하는 대안으로서의 균등한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반론보도 청구이다.

중재 제도의 운용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이재진 교수의 설문 연구 결과에서도 읽을 수 있다. 만족하는 수준이 34.6%, 불만이 34.8%이어서 중재 결과가 기대만큼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중재의 불성립에 대한 정기간행물사의 과실 부인이 51.4%, 반론문 게재 거부인 경우 31.4%가 된다. 응답자의 82.8%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 보장 환경과 걸맞게 중재 제도의 보다 탄력 있는 제도 운용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중재 조직 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직이어서 중재위원회의 업무 확대와 중요성에 비하면 오히려 소극적 기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장관직에 준하는 상근직으로 하여 조직의 업무 장악과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중재 과정에서 절차의 강화이다. 현재 중재 처리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 자료에 근거할 뿐 적극적 실증 자료 수집을 독려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언론의 피해를 소비자 보호로 확대하여 시정권고 기능을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간행물을 언론으로 보는 입장을 정보, 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정 권고 활동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의 표현물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산업화 차원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시각에 맞추어 중재 기능도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권고” 보다는 “윤리 준수 권고”로 규정하는 착안을 해볼 수도 있다.

넷째는 지역 사무소의 중재 홍보 활동 강화 대책 수립이다. 중재를 신청하는 다수의 신청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두려움은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오해이다. 중재 기능과 절차에 대한 홍보와 병행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양과 대중

매체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다중언론(인터넷 언론)의 피해 구제에 대비한 심도 있는 대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이제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집의 다양성, 프라이버시, 윤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중재 대책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VII. 언론 중재 활동의 확대 규정

인간의 언어 문자 표현이 반드시 사회성에 충실하지않은 않아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문이나 방송이 높은 이상을 내걸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정착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만 매체의 표현행위가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표현될 때 사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표현하는 의견이나 사실이 언어 문자 영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구성될 때 부단히 거리감이 발생한다. 현재 언론 중재의 근거는 “언론 보도”라는 범위 내에 한정하지만 이를 시대 인식에 맞게 확대 해석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정해온 법적 용어도 언론중재 이전의 모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의견(opinion)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확대 적용이다. 서양에서 신문을 비롯한 정기 간행물이 정착하는 생태의 과정을 보면 먼저 information이 기본이 되고 점차 opinion으로 확대하여 두개의 축으로 정기간행물의 구성이 성립된다. 의견의 제시가 일방적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여 다원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반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반론 보도의 기회가 성립되는 것은 타당하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게재(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박선영은 정의한다.

둘째는 용어의 해석 문제이다.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는 “보도”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언론 보도”로, 방송법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 등으로 편성을 구분한다. 보도는 뉴스와 같이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보도의 원형은 다르다. 영국에서 1640년대 이후 신문이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신문은 “to inform”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명사형이 information(알림 또는 정보)이다. “알려주다”, “통지하다”, “보도하다”의 뜻으로 일본에서 번역 사용되어 오다가 보도로 되었다. 뉴스는 정보 뿐 아니라 의견도 본질로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정보라는 말이 주로 첩보 시각에서 일제이후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